

- 교통신호등 위치이동 및 교통섬 철거에 관한 청원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청원일자 : 2000년 11월 13일

나. 청 원 자 : 구미시 형곡동 278-2번지 김형익외 1명

다. 회부일자 : 2000년 11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00년 11월 21일

제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청원설명의 요지

가. 소개의원 : 이규원 의원

나. 청원내용

-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형곡2동 사무소앞 4거리에 설치된 교통섬 철거
- 형곡 중앙시장앞 도로 불법주차 단속
- 교통섬 보조교통시설 설치
- 중앙시장 상가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사용 단속 요망

다. 참고사항

- 도로법 제39조 (도로의 구조·시설 등)
- 주차장법 제19조의4 (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윤 구

-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로서

- 형곡2동 사무소앞 4거리 교차로 4개의 교통섬은 동사무소앞 주변의 교통흐름과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자문을 받아 도로의 구조·시설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설치한 비교적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한 시설물이라 할 수 있겠으나
- 중앙시장앞 도로변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섬을 횡단하는 보행자가 사곡방면으로의 우회전 차량에 추돌할 우려가 있는 등 청원인의 청원 취지는 다소 이유가 있다고 사료됨.
- 그러나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잘못된 도로의 구조나 시설물로 인한 것이 라기 보다는 차량운전자의 주의태만이나 법규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, 중앙시장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청원인 자녀의 교통사고 또한 사고차량이 안전수칙과 법규를 무시한 위와 같은 안전사고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임.
- 형곡2동사무소 앞 사거리 현장을 확인 한 바, 중앙시장과 동사무소 앞 도로를 다수의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28조를 위반하여 도로 일부를 무단 점유하여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, 중앙시장 상가의 부설주차장 34면 또한 주차장법을 위반, 주차장의 불법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.
- 따라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형곡중앙시장 주변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원인이라 사료되며, 교통섬 철거나 횡단보도의 이전은 기존 시설 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과 또 다른 교통사고를 불러올 좋지 않은 방법이라 판단됨.
- 대안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필요할 경우 보조신호기와 안전표지 설치가 요구되나 이 또한 교통시설물 관리주체인 지방자치 단체장이 처리할 사항으로서, 본 위원회에서는 회의결과에 따라 의견을 채택, 집행부 담당부서에 이송하여 직접 제반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처리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4. 결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의견서 채택